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80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박충권

우재준 • 배준영 • 최수진

박준태 · 김은혜 · 유용원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